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 3. 5)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박 완 목]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페이지
2015 ~ 8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의안번호 제2015 - 8호>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5. 2.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 일자 : 2015. 2. 24.

2. 제안이유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1
- 다.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체험(과원)시설	7ha	- 사과과원 : 1.5ha - 오미자과원 : 0.25ha - 공원시설, 기타 : 5.25ha - 관리동 : 1동(207m ²)	

라. 위탁대상 사무

- 과원시설(사과, 오미자) : 시설관리 및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축제, 사과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 시설관리, 예취작업, 수목관리, 쓰레기수거, 공원 주변 환경정비 등
- 관리동 및 기타 부속시설 유지관리

마.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 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위탁자격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소요예산 : 없음

- 시설사용료를 매년 12월말까지 경영비 제외한 수익의 30% 거창군에 납부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63호]
 - 민간위탁 기준 제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 인력,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 선정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5조(위탁운영)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근거 제시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과·오미자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 이에 앞서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을 직영할 경우와 민간위탁할 경우의 장단점 비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장단점 검토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명시하고 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2011.07.06 조례 제2036호

(일부개정) 2014.07.30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

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 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6.12 규칙 제1127호

(일부개정) 2014.05.28 규칙 제1152호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정) 2009.12.30 조례 제1953호
(일부개정) 2014.10.01 조례 제2214호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